2

개인신용정보 전송

본 장은 고객, 정보제공자, 정보수신자간에 이루어지는 개인신용정보 전송 원칙과 각 유형별 전송 절치를 다룬다

각 유형별 전송규격 및 절차는 별도의 규격을 참조할 필요가 있으며, API 규격을 이용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절차는 3장에서 설명한다.

2.1. 개인신용정보 전송 개요

○ 개인신용정보 전송은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 ^❷고객 본인인증 ^❸개인신용정보 전송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

〈 개인신용정보 전송 절차 〉



가.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

○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 고객은 정보제공자에게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정보수신자에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개인신용정보 전송 시 정보제공자 및 정보수신자 예시 〉

분류	예시
정보제공자	금융회사, 공공기관, 마이데이터사업자 등
정보수신자	고객, 마이데이터사업자, 금융회사 등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 및 수신할 수 있는 전체 대상은 「참고1] 정보제공자·정보수신자 범위」참조

관련법령

- 신용정보법 제33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등에 대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1.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
 - 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
 - 4. 개인신용평가회사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자와 유사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전송 요구 방법) 고객은 정보제공자를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 전송을 요구할 수 있다.
 - ※ 금융회사 창구등을 통한 대면 전송요구 방식은 제반여건에 따라 추후 검토

- (전송 요구 사항) 고객은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 시 아래와 같이 법령상 요구하는 내용을 특정하여야 한다.
 - (전송 요구 화면 구성) 정보제공자는 고객이 전송요구 사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특정할 수 있도록 관련 양식, 화면 등을 제공해야 한다.

〈 전송요구 시 특정 정보 〉

분류	내용	비고
전송요구를 받는 자	개인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정보제공자	• 정보제공자(상호/명칭)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신용정보를 전송받는 정보수신자 (고객, 마이데이터사업자, 기타수신자 등)	• 정보수신자(상호/명칭)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신용정보	고객이 전송 요구하고자 하는 개인신용정보	• 정보의 항목
정기적 전송을 요구하는지 여부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전송 받을지 여부와 전송 주기	• 요구/미요구 • 주기(주1회)
전송요구 종료 시점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의 종료 시점	• 최대 1년
전송을 요구하는 목적	개인신용정보 전송을 요구하는 목적	 전송요구를 통한 본인 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의 이용 데이터 분석 서비스의 이용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개인신용정보를 전송받은 정보수신자가 수집한 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기간	• 서비스 종료시 또는 삭제 요구시까지

[※] 특정 정보에 대한 상세 구성은 신용정보원의 '알고하는 동의' 참조

때 관련법령

- 신용정보법 제33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⑤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전송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특정하여 전자문서나 그 밖에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1.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으로서 전송요구를 받는 자
 - 2.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신용정보
 - 3. 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 4. 정기적인 전송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요구하는 경우 그 주기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신용정보법시행령 제28조의3(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⑧ 법 제33조의2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전송요구의 종료시점
 -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9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 ① 영제28조의3제8항제2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전송을 요구하는 목적
 - 2.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나. 고객 본인인증

- (고객 본인인증)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를 받은 정보제공자는 본인인증을 통해 고객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에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여야 한다.
 - **(본인인증 방식)** 전송요구 대상(정보제공자. 정보수신자), 전송요구 규격 및 방식 (API방식, API외 방식)에 따라 개별인증 또는 통합인증을 선택적으로 적용된다.
 - ※ 고객 본인인증 적용에 대한 상세 내용은 「4장, 본인인증」에서 다룬다.

다. 개인신용정보 전송

- (개인신용정보 전송) 고객의 전송요구를 받은 정보제공자는 장애로 인한 지연을 제외하고는 개인신용정보를 즉시 전송하여야 한다.
 - **(즉시 전송)** 정보제공자는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를 받은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정보수신자에게 지체없이 전송하여야 한다.

즉시 전송 관련 사항

- ① 정보제공자는 개인신용정보 전송요청을 확인한 즉시 전산시스템에서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여 응답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 조회 및 전송 등 전산처리에 걸리는 시간 이외에 고의적인 지연이 있어서는 안 된다.
- ② 정보제공자는 개인신용정보 전송이 각사의 본질적인 금융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간시스템 원장DB가 아닌 별도의 개인신용정보 저장·전송시스템을 두어 처리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①과 마찬가지로 개인신용정보를 즉시 조회하여 전송하여야 하며, 기간시스템 원장DB에 저장된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경우와 최신성에서 차이가 없어야 한다.
- (지연 전송) 정보제공자는 전산시스템 장애등으로 인해 전송이 지연되거나 불가한 경우, 고객에게 마이데이터서비스, 이메일, 모바일메신저 또는 SMS 등을 이용하여 지연 사유를 고지하고 해당 사유 해소 후 즉시 정보수신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여야 한다.
- *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필요한 API의 전송특성 상 정보제공자가 자체적으로 전송을 재개하기 어려운 경우, 마이데이터사업자 및 고객의 전송 재요청에 응하여 전송을 재개할 수 있다.
- ※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로부터 5분이 경과하였을 경우 지연으로 봄

- (지연 고지) 정보제공자는 전송지연이 발생할 경우. 마이데이터사업자를 통해 고객에 지연사유를 고지할 수 있다. 단. 정보제공자가 서버 장애 등으로 인해 APL 응답 지연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고지할 수 없는 경우, 일정 시간 동안 회신을 받지 못한 마이데이터사업자는 장애로 판단하고. 정보제공자를 대신하여 고객에게 지연을 안내하여야 한다.
- ※ 고객의 명시적 전송 요청이 없는 정기적 전송 요청의 경우 고객에 지연 고지하지 않음

매 관련법령

- 신용정보법시행령 제28조의3(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 ⑤ 제4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이 전산시스템 장애 등으로 지연되거나 불가한 경우에는 전송이 지연된 사실 및 그 사유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 그 사유가 해소된 즉시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 (전송 거절 또는 정지·중단) 정보제공자는 아래의 거절 사유 발생 시.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를 거절 또는 정지・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제공자는 고객에게 마이 데이터서비스. 이메일. 모바일메신저 또는 SMS 등을 이용하여 전송요구 거절 또는 정지·중단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전송 요구 거절 또는 정지·중단사유

- 고객 본인이 전송요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 고객 본인이 전송요구를 하였으나 제3자의 기망이나 협박에 의하여 전송요구를 한 것으로 의심 되는 경우
- 전송 요구 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 적법한 정보수신자가 아닌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한 경우
- 고객의 인증정보 탈취 등 부당한 방법에 의한 전송요구임을 알게 된 경우 등

剛 관련법령

- 신용정보법 제33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⑧ 제1항에 따라 본인으로부터 개인신용 정보의 전송요구를 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은 신용정보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송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정지·중단할 수 있다.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의3(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① 법제33조의2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개인인 신용정보주체 본인이 전송요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2. 신용정보주체 본인이 전송요구를 했으나 제3자의 기망이나 협박 때문에 전송요구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 3. 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의 자가 아닌 자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한 경우
 - 4. 법 제33조의2제5항에서 정한 사항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
 - 5.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인증정보 탈취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인한 전송요구임을 알게 된 경우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② 법 제33조의2제8항에 따라 전송요구를 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이 전송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정지·중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한다.

2.2. 개인신용정보 전송 원칙

- (전송 요구 정보) 고객은 정보제공자가 고객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신용정보 등에 대해 전송 요구를 할 수 있다.
 - ※ 타 정보제공자로부터 수집한 정보는 개인신용정보 전송 의무 없음

전송 요구 정보

- 정보제공자가 고객으로부터 수집한 정보
- 고객이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한 정보
- 고객과 정보제공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에서 생성된 정보

- **(대상정보)** 정보제공자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별표1」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관한 신용정보의 범위 및 「마이데이터 API 표준 규격」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개인신용 정보를 전송할 수 있으며. 상기 범위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되 필요시 업권 협의를 통해 개인신용정보 전송 대상을 추가할 수 있다.

관련법령 回回

- 신용정보법 제33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제1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해당 신용정보주체(법령 등에 따라 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 사이에서 처리된 신용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일 것.
 - 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이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한 정보
 - 나.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에게 제공한 정보
 - 다. 신용정보주체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 간의 권리・의무 관계에서 생성된 정보
 - 2.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된 신용정보일 것
 - 3.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이 개인신용정보를 기초로 별도로 생성하거나 가공한 신용정보가 아닐 것.
- ※ 구체적인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 대상 범위 및 내역 등은 별도로 배포되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표준 API 규격」 참고
- (보안·비밀 계좌 정보 전송) 보안 계좌. 비밀 계좌 등과 같이 고객이 정보제공자에 비대면 정보 조회 금지를 요청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 대상 에서 제외된다. 해당 정보에 대해 전송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보안·비밀 계좌를 금융회사 창구 등을 이용하여 일반 계좌로 전환 후에 전송요구를 수행할 수 있다.

剛 관련법령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의3(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③개인인신용정보주체는법제33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다만,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요청으로 특약사항을 기재하거나 약정하여 해당 정보의 제3자 제공을 금지한 경우 또는 비대면 정보조회를 금지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하여 대면으로 전송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 (전송 형태) 정보제공자는 전송을 요구받은 개인신용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 가능한 형태로 정보수신자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 ※ 여기서 '정보처리장치로 처리가 가능한 형태'라 함은 정보수신자의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정보처리장치에 전산상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관(export)이 가능한 형태를 의미한다.
 - 단, 고객이 최근 5년 내의 개인신용정보가 아닌 정보에 대해 전송을 요구할 경우,
 정보제공자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 가능한 방식으로의 제공을 우선하되,
 출력문서 등과 같이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가능한 방식 외의 방식)으로도 제공할 수 있다.
 - ※ 5년 이내의 개인신용정보라 하더라도 삭제된 정보는 제공할 수 없으므로 전송 의무를 지지 않음

ո 관련법령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의3(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④ 제3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은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를 컴퓨터 처리가 가능한 방식으로 즉시 전송해야 한다. 다만, 최근 5년 내의 개인신용정보가 아닌 경우에는 신용 정보제공·이용자등이 정하는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 (전송요구 기간) 고객은 최대 1년까지 개인신용정보 전송을 요구할 수 있으며, 1년 이내에서 고객이 정한 정보전송 요구의 종료시점이 지나면 개인신용정보 전송을 다시 요구하여야 한다. 단. 고객은 종료시점이 도래하기 이전에 전송요구 기간을 변경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 (조회 기간) 정보수신자가 API방식을 통해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과도한 전송트래픽 집중, 정보제공자 API서버 과부하, 전송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일 (Date) 기준 API는 최대 31일, 월(Month) 기준 API는 최대 3개월로 조회기간 (From/To)을 설정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기준	업권	API ID	API 명
	은행,금투,보험	IRP-004	개인형 IRP 계좌 거래내역 조회
		은행-004	수신계좌 거래내역 조회
	은행	은행-007	투자상품계좌 거래내역 조회
		은행-010	대출상품계좌 거래내역 조회
	카드	카드-008	국내 승인내역 조회
		카드-009	해외 승인내역 조회
	금투	금투-003	계좌 거래내역 조회
일(Date) 기준 조회 API	보험	보험-006	보험 거래내역 조회
		보험-007	자동차보험 거래내역 조회
		보험-011	대출상품 거래내역 조회
	전금	전금-004	선불 거래내역 조회
		전금-103	결제내역 조회
	할부금융	할부금융-004	대출상품계좌 거래내역 조회
		할부금융-006	운용리스 거래내역 조회
	보증보험	보증보험-003	보증보험 거래내역 조회
	통신	통신-004	통신 결제내역 조회
월(Month) 기준 조회 API	카드	카드-004	청구 기본정보 조회
	통신	통신-003	통신 거래내역(납입내역) 조회

- (전송 주기) 정기적 전송과 비정기적 전송으로 나뉜다.
 - (정기적 전송)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를 위해 고객은 전송요구 기간 동안 정보제공자에 정기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단. 마이데이터사업자가 고객의 정기적 전송 요구에 의해 정보제공자에 개인신용정보를 요청할 경우, 원칙적으로 사전에 정의된 횟수(1주 1회) 이하로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청이 가능하다.
 - * 1주의 기준 시점은 일요일에서 토요일(7일)로 함
 - ※ 정기적전송시수수료부과가기능하며, 관련하여 「금융분야마이데이터서비스가이드라인」 참고

예시 고객요청에 의한 정기적 전송 예시

• (정기적 전송) 고객이 개인신용정보 전송을 정기적으로 요청할 경우, 마이데이터사업자는 1주 1회에 한 하여 개인신용정보 전송요청이 가능하다.



- (비정기적 전송) 고객은 전송 요구 기간 내 비정기적으로 정보제공자에 개인 신용정보를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고객이 정보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에 접속하여 마이데이터서비스의 실행. 새로고침 등을 통해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예시

고객 요청에 의한 비정기적 전송 예시

 (비정기적 전송) 고객은 다우로드. 마이데이터서비스 실행. 새로고침등을 수행하여 개인신용정보를 비정기적으로 전송요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비정기적 전송요구에 대한 별도의 횟수 제한은 없다.



매 관련법령

- 신용정보법 제33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④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 본인이 개인 신용정보의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에 대하여 해당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같은 내역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2조의9(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⑥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은 제33조의2제4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정기적으로 전송할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비용을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 (개인신용정보 삭제) 정보수신자등과 같이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에 의해 개인신용정보 를 보유한 자는 고객이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시 특정한 개인신용정보 보유기간이. 지났을 경우, 또는 고객이 개인신용정보 삭제를 명시적으로 요구할 경우, 해당 개인신용 정보를 완전히 삭제하여야 한다.
 - ※ 개인신용정보 삭제시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7조의2(개인신용정보의 관리방법 등)를 따라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삭제하여야 한다.

참고

- 마이데이터사업자는 고객이 개인신용정보 철회를 요구할 경우, 고객에게 개인신용정보 삭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 상세내용은 3.4. 마이데이터 개인신용정보 전송 내역 관리 참조

매 관련법령

• 제17조의2(개인신용정보의 관리방법 등) ⑦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제1항제2호 및 법제20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는 경우 그 삭제된 개인신용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3. 개인신용정보 전송 방식

- (전송방법) API 방식 및 API 외 방식으로 전송이 가능하다.
 - (API방식) 사전에 정의된 API 규격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마이데이터사업자가 고객의 전송요구에 따라 정보제공자에게 개인신용정보 전송을 요청하는 경우 반드시 API방식을 이용해야 한다. API방식의 전송과 관련 상세 절치는 「3. 마이데이터서비스」에서 설명한다.
 - ※ 세부 API 전송 규격은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표준 API 규격」참고
 - (스크린 스크레이핑 방식 등 이용 금지) 마이데이터사업자는 반드시 API방식과 같은 정해진 방식을 이용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여야하며 전자식카드. 이용자번호 등의 접근매체 또는 고객의 신분증표 제시 등의 수단 등과 같이 법령상 금지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

관련법령

- 신용정보법 제22조의9(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③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수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사용·보관함으로써 신용정보주체에게 교부할 신용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이하이 조 및 제33조의2에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 이라 한다)가 선정하여 사용・관리하는 신용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수단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접근매체
 - 2. 본인임을 확인받는 수단으로서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 제시 또는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 (API 외 방식) 정보제공자가 전문 등과 같이 API 이외의 방식을 이용하여 개인신용 정보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마이데이터사업자 이외의 정보수신자가 고객을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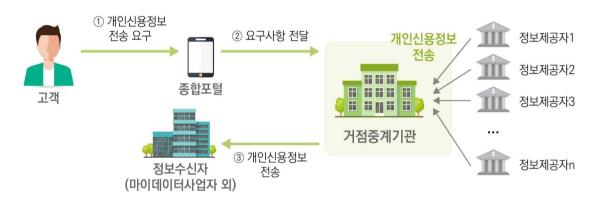
2.4. 개인신용정보 전송 유형

- 개인신용정보 전송 유형은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 (고객에 전송) 고객이 종합포털을 통해 정보제공자에 고객 본인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할 것을 요구하면. 정보제공자는 고객이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거점중계기관을 통해 고객의 PDS에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한다.



※ 상기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며, 상세 절차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라인」 참고

② (마이데이터사업자 외 기관에 전송) 고객이 종합포털을 통해 마이데이터사업자 외 기관에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할 것을 요구하면, 정보제공자는 거점중계기관을 통해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한다.



- ※ 상기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며, 상세 절차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라인」 참고
 - **③ (마이데이터사업자에 전송)** 고객이 마이데이터사업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할 것을 요구하면, 해당 정보제공자가 마이데이터사업자에게 API를 이용하여 개인 신용정보를 전송한다.



〈참고: 전송 유형 비교〉

구분	① 고객에 전송	② 마이데이터사업자 외 기관에 전송	③ 마이데이터사업자에 전송
용도	개인신용정보 전송	개인신용정보 전송	마이데이터 서비스
전송요구 주체	고객	고객	고객
전송요구 요청 대상	정보제공자	정보수신자	정보수신자
정보 수신자	고객	마이데이터사업자 외 정보수신자	마이데이터 사업자
전송방식	API 외 방식 + API 방식	API 외 방식 + API 방식	API방식
본인인증	통합인증과 유사 또는 이에 준하는 방식	통합인증과 유사 또는 이에 준하는 방식	개별인증 통합인증
중계기관, 거점중계기관	거점중계기관	거점중계기관	중계기관

[※] 스크린 스크레이핑이 금지되는 2022.1.1. 이후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정보제공자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할 경우, 정보제공자-마이데이터사업자는 반드시 API를 이용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여야 한다.

2.5. 전송 유형별 전송 절차 및 규격

가. 고객에 개인신용정보 전송

〈 고객에 개인신용정보 전송 〉



○ (전송 요구) 고객은 종합포털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전송을 요구(비대면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고객은 아래의 내용을 특정하여 전송을 요구하여야 한다.

〈 전송 요구시 특정 사항 예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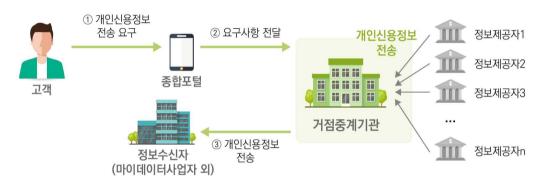
특정 사항	특정 필요	설 명
전송요구를 받는 자	0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	본인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신용정보	0	
정기적 전송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요구 시 그 주기	0	
전송요구의 종료시점	0	
전송을 요구하는 목적	0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0	

○ **(본인인증)** 정보제공자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이하 종합포털(App), 거점중계기관) 이 제공하는 통합인증 결과에 따라 전송요구 주체가 고객 본인임을 확인한다.

- (전송 절차 및 규격) PDS(Personal Data Storage)를 통해 전송하며 규격, 절차 및 보호대책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상기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상세 절차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라인」 참고

나. 마이데이터사업자 외 기관에 개인신용정보 전송

〈마이데이터사업자 외 기관에 개인신용정보 전송〉



○ (전송 요구) 고객은 종합포털을 이용하여 개인신용정보 전송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아래의 내용을 특정하여 전송을 요구하여야 한다.

〈 전송 요구시 특정 사항 예시 〉

특정 사항	특정 필요	설 명
전송요구를 받는 자	0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0	해당 정보수신자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신용정보	0	정보주체가 직접 입력 또는 선택
정기적 전송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요구 시 그 주기	0	
전송요구의 종료시점	0	
전송을 요구하는 목적	0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0	

- (본인인증) 정보제공자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이하 종합포털(App), 거점중계기관)이 제공하는 통합인증 결과에 따라 전송요구 주체가 고객 본인임을 확인한다.
- (전송 방식) 전송요구 주체가 고객본인임이 확인되면 정보제공자가 정보수신자에게 거점중계기관을 통해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한다.
- (규격 및 절차) 거점중계기관이 정보제공자와 정보수신자를 중계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며 규격, 절차 및 보호대책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상기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상세 절차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라인」참고

다. 마이데이터사업자에 개인신용정보 전송

〈 마이데이터사업자에 개인신용정보 전송 〉



- ※ 공공 마이데이터(국세, 지방세, 사회보험료 납부정보 등)에 대한 중계 관련 업무는 한국 신용정보원에서 수행
- (전송 요구) 정보주체는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제공하는 웹 및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여. 개인신용정보 전송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아래의 내용을 특정하여 전송을 요구하여야. 하다.

〈 전송 요구시 특정 사항 〉

특정 사항	특정 필요	설 명
전송요구를 받는 자	0	정보제공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	해당 마이데이터사업자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신용정보	0	정보주체가 직접 입력 또는 선택
정기적 전송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요구 시 그 주기	0	
전송요구의 종료시점	0	
전송을 요구하는 목적	0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0	

- (본인인증) 정보제공자는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인증수단(개별인증) 또는 공통으로 제공되는 인증수단(통합인증)을 통해 고객본인임을 확인한다.
- (전송 방식) 본인인증을 통해 고객본인임이 확인되면 정보제공자는 마이데이터사업자에게 직접 또는 중계기관을 통해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한다.
- (규격 및 절차) 별도로 정해진 API규격과 관련절차를 통해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 전송 관련 상세 절차는 3장. 마이데이터서비스에서 설명한다.